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천원
- 징 수 결 정 액 : 376만 5천원
- 실 제 수 납 액 : 376만 5천원
- 정 리 보 류 액 : 0천원
- 미 수 납 액 : 0천원
-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100.0%)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00.0%(전년도 100.0%)임.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200 세외수입	-	3,765	3,765	-	-	-	-	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	36	36	-	-	-	-	100.0
216 이자수입	-	36	36	-	-	-	-	100.0
216-03 기타이자수입	-	36	36	-	-	-	-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	3,729	3,729	-	-	-	-	100.0
224 기타수입	-	3,729	3,729	-	-	-	-	100.0
224-07 그외수입	-	3,729	3,729	-	-	-	-	100.0

2. 세출결산

- 당 초 예 산 : 13억 890만 6천원
- 예 산 증 감 : 0천원
- 예 산 현 액 : 13억 890만 6천원
- 지 출 액 : 12억 2,078만 3천원
- 이 월 액 : 0천원
- 집 행 잔 액 : 8,812만 3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7%(전년도 7.2%)가 발생
 - (사유별 금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0만원, 지출잔액 7,312만 3천원임.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308,906	1,220,783	-	88,123	6.7
사 업 예 산 계	1,019,611	959,143	-	60,468	5.9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31,696	876,417	-	55,279	5.9
경제범죄 수사활동 추진	716,131	666,710	-	49,421	6.9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716,131	666,710	-	49,421	6.9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215,565	209,707	-	5,858	2.7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1,668	39,483	-	2,185	5.2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3,897	170,224	-	3,673	2.1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87,915	82,726	-	5,189	5.9
안전범죄 수사활동 추진	87,915	82,726	-	5,189	5.9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87,915	82,726	-	5,189	5.9
일 반 예 산 계	289,295	261,640	-	27,655	9.6
기 본 경 비 (경제수사과)	238,639	210,986	-	27,653	11.6
기 본 경 비 (안전수사과)	50,656	50,654	-	2	0.1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illegible]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조달청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3,200천원) 및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 수당반납액(528천원) 등 ‘세외수입’ 총 376만 5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액(D)		미수납액 (E=B)-(C)-(D)	예산수납률 (C/A)	징수율 (C/B)
				정리 보류	시효 완성			
200 세외수입	-	3,765	3,765	-	-	-	-	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	36	36	-	-	-	-	100.0
216 이자수입	-	36	36	-	-	-	-	100.0
216-03 기타이자수입	-	36	36	-	-	-	-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	3,729	3,729	-	-	-	-	100.0
224 기타수입	-	3,729	3,729	-	-	-	-	100.0
224-07 그외수입	-	3,729	3,729	-	-	-	-	100.0

〈 2025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한 차이 발생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비율
그외수입	0	3,729	3,729	3,729	100%

▶ 발생 사유 : 조달청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수입(3,200,400원) 및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반납액(528,400원)

- 민생사법경찰국의 세입은 비교적 소액이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달청 유류카드 포인트(3,198,270원)를 6년간 세입 누락시켜 실제 수납하지 않았는바, 세입 발생 사안별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세밀한 세수 추계로 세원 누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불용 과다 사업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3억 890만 6천원 중 12억 2,078만 3천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6.7%(8,812만 3천원)로 전년(7.2%) 대비 0.5%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0.9%)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사업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308,906	1,220,783	-	88,123	6.7
사업예산계	1,019,611	959,143	-	60,468	5.9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931,696	876,417	-	55,279	5.9
경제범죄 수사활동 추진	716,131	666,710	-	49,421	6.9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716,131	666,710	-	49,421	6.9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215,565	209,707	-	5,858	2.7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1,668	39,483	-	2,185	5.2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3,897	170,224	-	3,673	2.1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87,915	82,726	-	5,189	5.9
안전범죄 수사활동 추진	87,915	82,726	-	5,189	5.9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87,915	82,726	-	5,189	5.9
일반예산계	289,295	261,640	-	27,655	9.6
기본경비(경제수사과)	238,639	210,986	-	27,653	11.6
기본경비(안전수사과)	50,656	50,654	-	2	0.1

-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7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6억 6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6.9%의 불용률(불용액 4천 9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며, ‘국외업무여비’를 전액(1천 5백만원) 불용처리했음.

〈 2025회계연도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716,131	666,710	49,421	6.9%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16,917	14,723	2,194	13.0%
사 무 관 리 비	330,120	330,118	2	0.1%
공 공 운 영 비	26,100	24,173	1,927	7.4%
국 내 여 비	59,500	47,824	11,676	19.6%
국 외 업 무 여 비	15,000	-	15,000	100.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27,500	27,408	92	0.3%
특 정 업 무 경 비	239,400	221,093	18,307	7.6%
배 상 금 등	500	300	200	40.0%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094	1,071	23	2.1%

※ 불용사유

- ▶ 국외업무여비 : 특별사법경찰 업무 특수성 등으로 인한 해외 현지기관 섭외 어려움, 현안 민생범죄 수사 집중 및 강화된 출장 심사요건 등으로 불용
- ▶ 배상금 등 : 참고인 여비 지급대상은 범죄 피의자나 피청구자가 아닌 단순 목격자 등 제3자로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으로 일부 불용 발생

- 이중 ‘국외업무여비’는 해외 우수 특별사법경찰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1천 5백만원)으로, 민생사법경찰국은 3년 연속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는바, 2023년에는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전액(1천 5백만원), 2024년에는 현안 수사·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집중 및 출장 심사 기준 강화로 전액(1천 5백만원), 2025년은 해외 현지기관 섭외 어려움, 현안 민생범죄 수사 집중 및 강화된 출장 심사요건 등에 따라 전액(1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2025.1.17.)은 “국제 교류 및 협력 등 필수불가결한 출장만 추진, 출장목적 및 세부내용(일정, 인원 등) 적절성 사전 검토 강화, 벤치마킹 출장은 최근 3년 내 동일목적·동일국가 등 출장 수행이력 있을 시 원칙적 배제, 기관면담 진행시 면담 일시 및 면담자 확정 사전협의 내용 증빙 자료 첨부” 등 출장 승인 요건이 대폭 강화했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국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10,000	0	10,000 (100%)	15,000	0	15,000 (100%)	15,000	0	15,000 (100%)

- 행정안전부(「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 취소 ·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¹⁾ 통해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2023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137조)의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생사법 경찰국은 법령에 부합한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한편, 고도화되는 범죄에 맞추어 선진 외국 수사기법 도입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선진 및 혁신사례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서울특별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697), 제안일 2025년 5월 26일.

- ‘재료비’는 유통식품 및 의약품 유상수거료로 전년(1천 5백만원)대비 3백만원 감액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0.6%(불용액 127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최근 4년간 ‘재료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년 재료비	12,750	10,731	2,019	15.8%
2023년 재료비	15,000	12,727	2,273	15.2%
2024년 재료비	15,000	10,154	4,846	32.3%
2025년 재료비	12,000	10,729	1,271	10.6%

- ‘배상금 등’은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참고인 여비 지급시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26.1.2.)에 따른 지급 금액 상승에 따라 전년 (90만원)보다 증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60.0%(불용액 60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 최근 4년간 ‘배상금’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년 배상금 등	1,000	315	685	68.5%
2023년 배상금 등	450	360	90	20.0%
2024년 배상금 등	900	50	850	94.4%
2025년 배상금 등	1,000	400	600	60.0%

〈 최근 4년간 참고인 조사 건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고인 조사 건수	26	49	34	31

※ 출처 : 민생사법경찰국, 2026년 6월 4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바, 민생사법경찰국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및 합리적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사무관리비’의 자의적 예산집행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 사업별 등 ‘사무관리비’ 총액은 5억 5천 7백만원 (전년 5억 5천 3백만원 대비 0.6%(330만원) 증액)을 편성하고, 5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여 0.7%의 불용률(불용액 380만원)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국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편성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436,053	418,864	17,189 (3.94%)	553,632	504,281	49,351 (8.9%)	556,972	553,104	3,868 (0.7%)

- 또한, “경제범죄 지명활동 수사활동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압수물 등 폐기비용’은 50만원을 편성했으나 291만원을 집행하여 241만원(483%)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의 ‘교육운영비 (175%)’ 등 ‘사무관리비’의 일부 항목은 당초 편성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국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목	2025년도					2026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편성액
합 계			556,972	553,104	3,868	0.7%	626,109
경제수사과 소계			469,102	465,360	3,742	0.8%	581,816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	계	330,120	330,118	2	0.1%	220,261
		기획단속 등 매식비	11,880	11,583	297	2.5%	12,960
		차량 임차료	207,095	207,095	-	-	65,852
		피복비	38,150	37,352	798	2.1%	25,870
		홍보비	26,536	26,216	320	1.2%	66,881
		수사활동경비	19,440	18,735	705	3.6%	19,440
		압수물등 폐기 비용	500	2,915	△2,415	△483.0%	3,300
		수사팀 운영	22,219	22,180	39	0.2%	21,828
		체력단련실 운영	3,300	2,992	308	9.3%	3,630
		수사자문수당 등	1,000	1,050	△50	△5.0%	500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무	계	28,168	26,042	2,126	7.5%	24,672
		강사료	11,808	11,284	524	4.4%	11,808
		원고료	2,160	288	1,872	86.7%	720
		책자인쇄비	9,880	10,990	△1,110	△11.2%	8,548
		중식비	4,200	3,150	1,050	25.0%	3,476
		교육운영비	120	330	△210	△175.0%	120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	계	34,115	34,115	-	-	261,600
		제안서 평가위원 등 수당	1,600	1,600	-	-	1,600
		한글웹기안기 상용SW구매	32,515	32,515	-	-	-
		모바일 포렌식 상용SW구매	-	-	-	-	259,600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 수당	-	-	-	-	400
기본경비 (경제수사과)		계	76,699	75,085	1,614	2.1%	75,283
		기본사무용품종이류	766	767	△1	△0.1%	800
		소규모수선비	185	170	15	8.1%	185
		행정장비 수리비	1,008	880	128	12.7%	1,008
		도서구입비	300	293	7	2.3%	300

세부사업	통계목	2025년도					2026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편성액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59,940	58,491	1,449	2.4%	59,94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4,500	14,484	16	0.1%	13,050
안전수사과 소계			44,656	44,654	2	0.1%	44,187
기본경비 (안전수사과)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725	605	120	16.6%	756
		소규모수선비	175	236	△61	△34.9%	175
		행정장비수리비	756	761	△5	△0.7%	756
		도서구입비	200	215	△15	7.5%	200
		주요업무추진 급량비	37,800	37,800	-	-	37,80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5,000	5,037	△37	△0.7%	4,500

- ‘사무관리비’는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과목이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민생사법경찰국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한 자의적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운용 기준에 부합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성과지표의 합리적·실질적 성과중심의 목표치 설정 필요

-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달성도는 50%로서,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 중 성과달성도 60% 미만 5곳에 포함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목표가 90%로 동일하고, 목표(90%)를 상회하는 실적(2023년:95%, 2024년:95.4%)을 달성하였음에도 2025년 목표는 2024년 실적에 못 미치는 목표(91%)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수준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하는 행태를 전례답습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생침해 범죄 감소나 시민 피해 회복과 같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바,
 - 향후 사건의 난이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일반 사건과 기획·고난도 정책수사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정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 중심의 보다 입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민생사법경찰국 성과지표는 총 4가지로, 기존 경제수사과의 “기획수사 등 수사사건 송치율(%)” 및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이렇게 2가지 성과지표였다가, 2024.7.1.부 조직개편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이 국으로 승격되어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안전수사과의 성과지표 “시민생활 안전범죄 입건건수(건)” 및 “기획수사 등 수사사건 송치율(%)” 2가지 성과지표가 2025년부터 신설되었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국 성과지표 달성 현황 〉

구분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25년 달성성과
경제수사과	기획수사 등 수사사건 송치율(%)	송치건수/ 입건건수	목표	94	94.8	95.6
			실적	95	95.4	92.6
			달성률	101%	101%	97%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교육 이수율	목표	90	90	91
			실적	91.2	92.2	97.3
			달성률	101%	102%	107%
안전수사과	시민생활 안전범죄 입건건수(건)*	입건건수	목표	-	-	670
			실적	-	-	678
			달성률	-	-	101%
	기획수사 등 수사사건 송치율(%)*	송치건수/ 입건건수	목표	-	-	94.5
			실적	-	-	92.5
			달성률	-	-	98%

<참고> 2025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경제범죄 수사사건 송치율 : 특별사법경찰 민생경제 분야 등 민생사범 233건 입건
 - 다단계 15건, 대부 30건, 부동산 60건, 상표 128건
 - ※ 송치율 실적 : 92.6% (목표치 95.6% 대비 97% 달성)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이수율 : 수사관 전문성 향상 및 인권수사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계적 직무교육 실시
 - 기본교육 : 신규 중심 형사소송법, 수사실무 등 직무교육(3회)
 - 특화교육 : 청소년 마약, 포렌식 기법 등 분야별 전문교육(5회)
 - ※ 교육이수율 실적 : 97.3% (목표치 91% 대비 107% 달성)
- 안전범죄 입건건수 및 안전범죄 수사사건 송치율 : 특별사법경찰 민생안전 분야 등 민생사범 678건 입건
 - 보건복지(동물, 청소년보호 포함) 159건, 식품안전 292건, 환경·개발제한 197건, 의약 30건
 - ※ 송치율 실적 : 92.5% 달성 (목표치 94.5% 대비 98% 달성)

※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결산서 작성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안정현